



제 435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의무화〉
■ 김종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341호)

2026. 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성 소 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14조)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종민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1. 27.
3. 회부연월일 : 2026. 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문제로 인해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이 실효적이지 않은 상황임. 특히, 배달플랫폼기업이 수수료, 배달비, 약관개정 등 상생협약 조건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상호 신뢰 상실 및 불공정 거래로 인한 문제점이 국정감사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기적인 조사와 공표, 자료제출 의무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적인 정책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실태조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 조사결과 공표를 법제화하고, 실태조사의 대상 및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

Ⅲ. 검토의견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의무화(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1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필요하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14조(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매년-----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저해하는 계약 및 거래 등 행위에 관한 사항
<신설>	3. 그 밖에 중소기업부장관이 상생협력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대기업과----- ----- ----- -----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현행법은 중소기업부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임의적으로 대·중

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기 조사 외에도 필요시 특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조사 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며, 실태조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구하는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최근 배달앱 시장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간의 수수료, 배달비, 약관개정 등 상생협약 조건에 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어 대·중소기업 상생협약과 관련한 상호 신뢰 저하 등이 그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바, 온라인 플랫폼 기업과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들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상호 불신을 해소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¹⁾

이에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함으로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 추진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

1) 한예주, "배달앱 독과점 그늘..."시장 질서 다시 짜야"[치킨공화국의 몰락]", 아시아경제, 2025.10.24. (<https://www.asiae.co.kr/article/2025100212545130008>)

여 공표하도록 하는 경우 조사의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조건에 관한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²⁾,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³⁾,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⁴⁾ 등의 경우에도 하도급거래, 가맹사업거래, 대규모유통업 등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및 결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및 조사절차,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하도급거래 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서면실태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 조사기간, 조사내용, 조사방법,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 요구사유,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과 공표를 의무화하고 있음.

아울러 매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경우 개정안과 같이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한 기업의 협조의무를 법률에 함께 규정하여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정부의 대·중소기업 실태조사 규정을 강화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과 같이 실태조사와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술한 법률⁵⁾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는 실태조사들과 그 조사 내용이나 제출 자료가 중복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행정조사에 있어서 중복조사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⁶⁾의 취지를 고려하여 개정안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거나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충분한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6)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도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불공정거래와 독과점 문제 해결을 주요 소관 업무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다양한 서면실태조사를 연간 수차례 진행하고 있으므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할 필요성이 크지 않으며, 오히려 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 의 처
02) 6788-5463